

2026학년도 가을학기 「평생교육실습」교과목 운영 안내

1. 실습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대상	2009학년도 이후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신입생(2009학번 포함) ※ 이전 학번(구법 대상자)의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별도 문의
자격요건	직전 학기(2026 봄학기)까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u>필수 교과목(5과목) 중 「평생교육실습」을 제외한 3과목 이수</u> (필수 교과목 : 평생교육연구, 평생교육방법론세미나, 평생교육경영의 이론과 적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유의사항	<p style="color: red;">※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학과 학생에 한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p> <p style="color: red;">※ 위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평생교육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 실습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성적이 'F'처리되므로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 blue;">※ 우리 대학원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학점은행기관 발급용)를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2. 평생교육실습 진행 과정

- 1)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섭외(<실습의뢰서>를 기관에 제출)
 - * <실습의뢰서>는 첨부파일 "2. 실습의뢰서"를 출력하여 수기 작성
- 2) <실습신청서>,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원본)>, <실습의뢰서(사본)>,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사본>을 **학교에 제출**
 - * 위 1)과 2)는 **6월 22일(월)부터 7월 1(수)까지** 완료
- 3) 「평생교육실습」교과목 인터넷 수강신청 (**7월 15일(수)부터 20일(월)까지**)
- 4) 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 (**7월 18일(토) 또는 7월 19일(일) 진행**)
- 5) 실습 진행 : **7월 20일(월) ~ 11월 13일(금)까지**
- 6) 실습최종평가회 참석 [**11월 14일(토) 또는 15일(일) 진행 예정**]
- 7) 실습 종료 후 평생교육현장실습 보고서(표지)+실습일지, 실습지도기록서 1부,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1부,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 제출(**11월 16일(월)~ 11월 20일(금)까지**)

3. 실습 신청

1) 실습신청서(양식1),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양식6),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사본 제출

○ 제출기간: 2026. 6. 22.(월) ~ 2026. 7. 1.(수)

※ 우편접수 시: 우체국 소인 2026. 7. 1.(수)까지 유효함

○ 제출 장소: 평생교육학과 학과사무실

※ 학과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436호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우편번호:03087)

2) 수강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평생교육실습」교과목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2026. 7. 15.(수) ~ 2026. 7. 20.(월)

※ 실습신청서,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포함) 제출 및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수강 신청이 모두 완료 되어야만 「평생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실습 신청서 제출 후 실습기간 및 실습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습 기관 선정 시
반드시 적격 실습기관인지 실습기관에 자세히 문의한 후 신청할 것.

4. 실습 기간 및 시간

○ 2026. 7. 20.(월) ~ 2026. 11. 13.(금)

○ 실습은 반드시 실습기간 내에 마쳐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실습 인정 시간	
주중(월~금)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말(토, 일)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야간(18:00 이후)	하루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유의사항	
○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실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에도 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습일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함	

○ 최소 4주간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 권장함

-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함.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함.

- 법정 공휴일이 실습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실습으로 인정됨.

5. 제출서류

○ 실습 전

서류	제출 장소
① 실습 의뢰서【양식 2】 양식 변경 금지 (붉은 글씨 해당 내용만 작성하여 출력 후 실습기관에 제출)	실습 기관
① 실습 신청서【양식 1】 ②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양식 6】 ※실습지도자/기관장 날인 필수 ③ 실습기관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증 사본	학과사무실 2026. 6. 22.(월) ~ 2026. 7. 1.(수)

○ 실습 후

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① 실습생 제출 서류 : 평생교육현장실습 보고서+실습일지【양식11,5】 ② 기관 제출 서류 : 실습생이 받아서 제출 - 실습지도기록서 1부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원본」1부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원본」1부	* 제출 기한 : 2026.11.20.(금) * 제출 장소 : 학과사무실

※ 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평생교육현장실습보고서(표지)>, <실습일지> 순으로 엮어 학과사무실로 제출.
- 실습생은 기관 제출 서류를 실습기관으로부터 받아 제출하되,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받아 제출해야 함.

6. 평생교육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선정

- 실습기관은 법규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한하며, 실습 학생이 선정.
 - 첨부파일 중 '학생배부용'지역별 실습 기관 목록' 참고
(첨부파일에 없는 기관도 아래 실습기관 요건에 부합하면 실습 가능)

<표 1> 평생교육현장실습 대상 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가.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기관 •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진흥원,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 평생학습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필수 확인 사항) 적합한 실습 기관의 조건**

- ① **실습기관**은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 유형별 분류(2014.1)'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 기관 혹은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비영리단체등록증, 시설신고증, 등록증, 지정서 등 제출)이어야 함.

- ② **실습지도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③ **실습지도자 1인당 동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실습생은 가능한 5명의 범위 내**여야 함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 ④ **실습기관의 실습프로그램**은 현장실습의 목적과 목표에 기반하여 현장실습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

<p>[현장실습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평생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 <p>[현장실습의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기관에서 배운 평생교육 관련 이론을 실습현장에 적용 및 실천 •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올바른 태도와 자질 함양 • 실습현장의 조직 내 인간관계가 갖는 역동성 이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평생교육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방법 습득 • 평생교육사로서의 삶의 준비와 소질과 적성이 갖춰졌는지 실습생 스스로 평가, 검증 • 실습생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력개발 계획 수립의 기회 제공

○ 실습교육 내용은 **필수 및 선택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며, 그 외는 자율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기준을 참조함

- 필수항목: 모든 실습교육에 4개 항목 필수적으로 구성

구분		실습내용
필수 항목	1. 오리엔테이션	① 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소개 - 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규정 안내 포함 ② 실습기관유형 대비 기관특성 소개 -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③ 해당 기관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④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2. 행정업무	① 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② 사업예산(안) 편성 안내
	3. 모의 프로그램 기획	①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② 학습자 요구분석 실시(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③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4. 실습평가	실습 평가회 : 실습생의 실습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등

- 선택항목: 3개 내용 중 최소 1개 내용을 선택하여 구성

구분		실습내용
선택 항목	1.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 분석	① 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 ② 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2.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① 학습자 관리 및 지원 ②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③ 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④ 학습시설, 매체 관리 및 지원 ⑤ 프로그램 관리, 운영 및 모니터링 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 별개 프로그램 2개 이상 수행
	3.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행사 참석	①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 ② 평생학습 관련 행사(지역축제, 박람회 등) 참석 ※ 실습목적에 맞춰 2개 이상 5개 이하 기관을 방문하되, 총 방문기간은 3일을 넘지 않도록 함. ※ 각 기관방문에 대해서는 출장 및 결과보고서 제출 권장

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⑥ 현장실습 인정불가 형태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학과 실습 운영에 대한 내부 규정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 인정 불가)

- ① 실습생 자신이 기관장인 경우
- ② 원격으로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③ (원장 1명이 직원의 전부인) 사설 평생교육원에서 실습생이 '지도를 받는 실습생'으로서가 아니라 '기관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담당하는 경우
- ④ 실습 기관이 실습비의 일환으로 사전에 해당 실습기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⑤ 실습 기관이 실습 중간에 실습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⑥ 실습을 받는 중, 실습 기관이 기관의 프로그램 수강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⑦ 평생교육 업무 외의 다른 업무 위주로 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업무보다 사서 업무 위주로 하는 경우, 청소년 상담실,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에서 상담업무를 위주로 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습내용과 중복된 내용의 실습을 하는 경우, 방과 후 지도교실에서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실습을 하는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육업무나 방과 후 학습지도 업무 위주로 실습을 하는 경우)

※ 위에서 제시하는 실습 기관의 조건에 맞지 않거나, 위의 학과 규정에 위반이 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실습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성적이 F 처리됨. (실습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실습이 인정 안 됨.)

7. 평생교육실습 지도

- 실습지도라 함은 실습생 소양교육, 실습기관 적절성 평가, 출장에 의한 실습기관에서의 면대면 지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모든 지도 활동을 의미함.
- 실습기간 중 담당교수, 담당튜터가 실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습생들의 실습을 지도할 수 있음.

8. 평생교육실습 평가

- 실습기관의 「평생교육실습평가서」와 학생이 작성한 「실습일지」, 그리고 평생교육실습 담당교수 및 튜터가 작성한 「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를 참고하여 성적을 부여함.
- 성적처리: 종강 이후 최종 성적을 부여함.

[별표] 실습기관 유형 (아래에 없는 기관도 실습기관 요건에 부합하면 실습 가능)

구분	기관유형		예 시	
평생교육법	①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세종평생교육진흥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강원평생교육진흥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전남평생교육진흥원, 경북평생교육진흥원,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②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지정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③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④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등·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법령	⑥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형태는인정불가)
⑦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⑧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